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6월 27일,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9.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중립직불제와 경종농업과 축산업 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추가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법률상에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만,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개념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내 ‘기본직불시스템’으로 공익직불사업의 신청·접수, 자격 검증, 정보공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 관리, 지급 등 제반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관련 정보의 내실있는 관리에 기여하고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